

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중국은 아시아권 진출의 교두보이면서 수출 및 투자유치의 주요 시장국으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을 통해 경제·문화·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교류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출연금액 : 금150,000,000원

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3) 관련법령

가) 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
나) 조례 :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주요 사업

1) 경제통상 분야 지원

- 가) 관내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중국시장 진출 지원
- 나) 현지 공관, 코트라무역관, 지·상사 네트워크 구축
- 다) 국제전시회,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현지 마케팅지원
- 라) 구미 투자 가능 타깃 기업 발굴 등 기업투자 유치 활동

2) 국제교류 및 협력분야 지원

- 가)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
- 나)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

3) 구미시 중국 대표부 역할 수행

- 가) 중국과의 교류 협력 등 창구역할 수행
- 나) 구미시 기업인, 기관단체 등에 현지 방문활동 및 행정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본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창 열
	담 당	신 현 숙
	담 당 자	서 수 진 (480-6142)